

규정 코드	A01(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최종 제.개정일
규정 명칭	시행세칙	2004. 2. 14 제정 2013. 4. 01 개정 2014. 3. 29 개정 2015. 3. 21 개정

A01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오리엔티어링의 정의)

오리엔티어링은 경기자가 지상에 표시된 몇 개인가의 지점(컨트롤)을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주파하는 스포츠이다.

제 2 장 시.도 연맹

제3조 (설치근거)

정관 제1조(명칭)와 제4조(시.도 연맹 구성) 명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을 내부적으로 '중앙연맹' 이라 한다.
2. 시.도 연맹의 명칭 표기는 아래와 같다.

사)대한오리엔티어링 (시.도 연맹이름)연맹

제4조 (목적 및 신청 규정)

시.도 연맹은 본 연맹의 정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고, 아울러 지역적으로 건전한 오리엔티어링의 보급과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규 단체는 해당 연맹의 이사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을 구성하여 '연맹등록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연맹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본 연맹에 가입을 결의한 이사 회의록 또는 창립회의록
 -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 임원 구성조직표
 - 기타 필요로 하는 문서

3. 당해 연도 연회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운영)

본 연맹의 정관 및 규정에 준한다.

1. 조직은 본 연맹의 조직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운영은 본 연맹 정관과 운영규정에 상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각 연맹 정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시·도 연맹은 소속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시·도 연맹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3. 각종 사업에 관하여 본 연맹의 지도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도 연맹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본 연맹에 제안할 수 있다.
5. 회원(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6. 정관과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오리엔티어링의 지도와 보급과 위한 각종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본 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한다.
2. 회원은 정관에 의해 명시된 연맹회비를 매년 2월말까지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시·도 연맹은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1월말까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안, 임원명단 및 기타 갱신된 사항을 다음 해 1월초까지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4. 전국적인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시·도 연맹 간에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중복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도 연맹은 본 연맹의 일정 중재에 따라야 한다.
5. 시·도 연맹 등기 및 관리, 납세, 사업자등록, 지방체육회의 가입을 하여야 한다.
6. 정관과 운영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내용과 필요하다고 별도로 규정한 의무를 포함한다.

제8조(의무 이행을 위한 규정)

1.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무 불이행으로 규정한다.
 - ① 연회비를 아무런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최대 2회)
 - ② 오리엔티어링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세미나, 워크숍 등), 대회를 아무런 사유 없이 이행치 않는 경우(운영 포기)
 - ③ 제출 서류, 협조요청에 대한 답신 등의 처리 지연이나 불이행 경우(업무 태만)
 - ④ 정치,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경우
 - ⑤ 기타 의무를 이행치 않는 경우(불이행)
2. 업무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처리한다.
 - ① 위의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독촉, 독려한다.
 - ②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의)한다.

- ③ 이사회 결의를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9조(개인,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오리엔티어링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표창대상을 심의한다.

제 3 장 사무국에 관한 사항

제10조(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의 대 내.외적인 행정 및 사무에 관한 업무.
2. 홈페이지 운영, 관리 업무(등재 및 삭제)
3. 업무상 필요로 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이사회에 업무 보고.
4. 재산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상 금전 수수 관련 사항의 관리 및 독려 사항
5. 기타.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6. 업무 일지 작성
7. 업무접수, 회신 요청 문서(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
업무에 관한 문의,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처리가 중.장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급적 답신을 하거나 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간단한 답신으로 사안이나 문서 처리: 접수 후 즉시 최대 7일 이내
 - ② 의사 결정 후 공고(답신) 내용: 최종 의사 결정 후 10~15일 이내.
 - ③ 신규, 갱신 지도자 관련 증(서) 발행: 30일 이내
 - ④ 중요 문건의 접수: 어느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이 우선이며 내부적 결정에 따라 해당 개인(단체)에 통보(10일 이내)하고 관련 회의 소집(30~45일).

제11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보관)

본 연맹은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정관 (영구)
2. 임원 및 대의원 명부 및 이력서 (영구)
3. 재산 목록 (영구)
4.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 (영구)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년)
6.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및 공문 (5년)
7. 관공서 제출서류 및 기타 서류 및 장부 (5년)

제12조(인감 및 직인 관리)

1. 본연맹의 업무상 인감 및 직인. 간인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별지 제11호 서식 “법인인감, 직인, 간인 사용대장”에 내용을 기재 후 회장의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직접 제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사본을 1부 비치 보관해야 한다.

2. 법인인감. 직인. 간인은 외부로 반출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계산서 관리)

1. 업무 상 본 연맹, 시도연맹이 필요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전무이사의 결재를 득해야 하고,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간이계산서는 발행치 않으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1년 1회 또는 세무규정에 맞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서류의 인수 인계)

1. 연맹 운영 규정 제11조에 의한 제반 서류, 장부, 통장, 인감.관인 등의 인수인계는 인계자가 서면으로 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수자가 확인 날인 후 연맹 및 인수인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회계 사항(금전 수수 사항<금전기록부>이 기록된 문서와 거래 은행 통장 전체)에 대하여는 분명한 인수인계 사항이 나타나야 하며 불일치하는 사항은 상위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인계자의 과오로 인한 재산 상의 손해는 인계자가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4 장 회비에 관한 사항

제15조(임원회비의 정액)

주요 임원 및 이사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200만원 이상 (2014.03.29. 개정)
2. 부 회 장 : 50만원 이상 (2014.03.29. 개정)
3. 전 무 이 사 : 30만원 이상 (2014.03.29. 개정)
4. 이 사 : 20만원 이상 (2014.03.29. 개정)

* 지도자 관련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명시함.

제16조(시도연맹 연맹 회비)

시.도 연맹 연 회비 : 30만원

제17조(IOF에 년 회비 납부)

매년 초에 일정액을 납기에 맞추어 지불해야 한다.

제 5 장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18조(회계 업무)

정관 제5조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금전 관련 사항의 업무로 정관 제39조에 의한

회계 업무를 말한다.

제19조(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분류)

본 연맹 및 시도 연맹의 수입, 지출의 계정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통합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 으로 구분 한다.

①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계정과목은 회계 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

2. 삭제 (2014.03.29. 개정)

3. 삭제 (2014.03.29. 개정)

제20조(예산 및 결산 보고의 원칙)

1. 대한체육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2014.03.29. 개정)

2. 대한체육회 예산규정을 따른다. (2014.03.29. 개정)

3. 삭제 (2014.03.29. 개정)

4. 삭제 (2014.03.29. 개정)

제 6 장 이사 직무에 관한 사항

제21조(이사의 직무)

1. 전무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2. Foot O 이사: 국내 Foot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

3. MTB O 이사 - 국내 MTB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

4. Ski O 이사: 국내 Ski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

5. Trail O 이사: 국내 Trail O경기대회의 기획, 운영담당, 관련 업무 진행, **공인대회의 감독관 선임**, 인재 양성, 경기력 향상 및 자료의 연구 보고.

6. 교육 기술 이사: 교육 및 지도자 및 인재 양성에 관한 기획, 교육용 교재의 출판편집.

7. 지도제작 이사: 오리엔티어링 지도 작성에 관한 모든 것 및 지도제작지도자 양성.

8. 출판홍보 이사: 오리엔티어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판, 미디어 및 섭외 홍보.

9. 해외 이사: 해외의 행사, 교류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조사 보고.

10. 경기심판 이사: 각 종목별 심판의 자격 인정, 심판 보수 교육 및 관리, 대회별 심판의 배정.

11. IT 및 장비 이사: 국내 IT 및 장비 운영담당 및 자료의 연구 보고.

12. 청소년이사: 학교 체육 관련 사항과 청소년 관련 업무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업무 담당

13. 환경 이사: 오리엔티어링 행사장의 자연 보호 및 환경 등에 관한 업무 진행

14. 도핑이사: 도핑에 관한 인지, 홍보 업무

15. 일반이사: 미지정 이사는 필요 시 지정업무를 운영 및 자료의 연구 보고.

제 7 장 부 칙

제22조(경과 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정을 우선하며 관례에 따른다.

제23조(효력 발생)

이 규정을 제정한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04년 2월14일

이 규정의 제정일은 2009년 9월 일

이 규정은 2013. 4. 1일 개정하다.

이 규정은 2014. 3. 29일 개정하다.

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 개정함.